

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1. 의결주문

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-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에 사법보좌관 및 법관이 중복하여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의절차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절차와 같이 단순화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모함
-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배당기일을 중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제5조를 삭제하고, 「민사집행법」 제151조에서 정하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(안 제3조제4호 신설)

3.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「민사집행법」 제149조 및 같은 규정
이 준용되는 절차에서의 배당표의 확정 : 「민사집행법」 제151조의
규정에 따른 배당표에 대한 이의

제4조제2항 단서 중 “(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“해당법률”이라 한
다)”를 “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법률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
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에 따
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)	제3조(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)
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.	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제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「민사집행법」 제149조 및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절차에서의 배당표의 확정 : 「민사집행법」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표에 대한 이의
제4조(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	제4조(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p>제1항 각호의 해당법률(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“해당법률”이라 한다)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할 때에는 이들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⑩ (생략)</p> <p>제5조(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)</p> <p>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「민사집행법」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사법보좌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</p>	<p>----- 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법률”이라 한다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~ ⑩ (현행과 같다)</p> <p><삭제></p>
---	---

<p>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「민사집행법」 제152조제1항·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</p> <p>2. 제1호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중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송부할 것</p> <p>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일 또는 속행된 기일에 배당기일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판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 의하여 한 처분으로 보고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.</p>	
---	--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17